

12-02-095269

◀ 주의 사항 ▶

1.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취업 중인 사업체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차용, 알선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4.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 자격번호 : 06201120243L

■ 자격종목 : 토목기사

■ 성 명 : 정지운

■ 생년월일 : 1981.07.25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합격 연월일 : 2006년 06월 05일

■ 발급 연월일 : 2013년 05월 28일

국토교통부

※ 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발급함.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